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20일, 박춘희의원 발의
- 회부일자 : 2022년 11월 3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8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2022년 11월 13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춘희의원)

### 가.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조례의 각종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지도점검 사항을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발생억제 등에 대한 지도·점검 여부를 재량에서 의무로 규정  
(안 제17조 관련)
- 현행 조문 상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보다 명확히 규정  
(안 제17조제1호 관련)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이행여부” → “발생억제방법, 처리방

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영옥)

○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각종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로

현재 관내 대상업소는 159개소로 확인되며

(일반음식점 93, 휴양콘도미니엄 15, 집단급식소 37, 호텔업 8, 유통센터 6)

'21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다량배출사업장은 4,655톤을 배출해(가정: 3,882톤) 전체 발생량의 54.5%를 차지하였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조례 상 의무로는

사업 개시 30일 전 감량 의무 이행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을 이행하여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각종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자면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상 지도·점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도·점검할 수 있다”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감량 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를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발생억제 등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u>지도·점검</u>할 수 있다.</p> <p>1. 다량배출사업장의 <u>감량</u>의무 <u>이행계획 신고서 이행여부</u>와 <u>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u></p> <p>2. <u>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u></p> <p>3. (생   략)</p>	<p>제17조(발생억제 등에 대한 지도·점검) ----- ----- -- <u>지도·점검</u>하여야 한다.</p> <p>1. ----- <u>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 (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u>---</p> <p>&lt;삭   제&gt;</p> <p>2. (현행 제3호와 같음)</p>